

食品衛生法 公布

法律 第3823號(86. 5. 10)公布

調 查 部

第 1 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食品으로 인한 衛生上의 危害를 방지하고 食品營養의 質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國民保健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食品”이라 함은 모든 飲食物을 말한다. 다만 醫藥으로서 攝取하는 것은 제외한다.
2. “添加物”이라 함은 食品을 製造·加工 또는 保存함에 있어 食品에 添加·混合·浸潤·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物質을 말한다.
3. “化學的 合成品”이라 함은 化學的 手段에 의하여 元素 또는 化合物에 分解反應의 化學反應을 일으켜 얻은 物質을 말한다.
4. “器具”라 함은 飲食器와 食品 또는 添加物의 採取·製造·加工·調理·貯藏·運搬·陳列·授受 또는 攝取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食品 또는 添加物에 직접 接觸되는 機械·器具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다만, 農業 및 水産業에 있어서 食品의 採取에 사용되는 機械·器具 기타의 물건은 제외한다.
5. “容器·포장”이라 함은 食品 또는 添加物을 넣거나 싸는 物品으로서 食品 또는 添加物을 授受할 때 함께 引渡되는 物品을 말한다.
6. “표시”라 함은 食品, 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 포장에 기재하는 文字·數字 또는 圖形을 말한다.
7. “營業”이라 함은 食品 또는 添加物을 採取·製造·加工·輸入·調理·貯藏·運搬 또는 販

賣하거나 器具 또는 容器·포장을 製造·輸入 運搬·販賣하는 業을 말한다. 다만, 農業 및 水産業에 속하는 食品의 採取業은 제외한다.

8. “食品衛生”이라 함은 食品, 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飲食에 관한 衛生을 말한다.

9. “集團給食所”라 함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特定多數人에게 飲食物을 供給하는 寄宿舍·學校·病院·기타 厚生機關 등의 給食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 (食品 등의 취급) ①販賣(販賣의의 不特定多數人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의 採取·製造·加工·사용·調理·貯藏·運搬 및 陳列은 깨끗이 하고 衛生的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營業上 사용하는 器具 및 容器·포장은 깨끗하고 衛生的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 등의 衛生的 취급에 관한 基準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 2 章 食品 및 添加物

第4條 (販賣 등 禁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은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採取·製造·輸入·加工·사용·調理·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陳列하지 못한다.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有毒·有害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保健社會部長官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病原微生物에 의하여 汚染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不潔하거나 다른 물질의 混入 또는 添加·기타의 사유로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許可받지 아니한 者가 製造·加工한 것.
6. 第22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目製造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製造한 것.

第5條 (病肉등의 販賣등 禁止)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疾病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疾病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깃·臟器 또는 血液은 이를 食品으로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採取·輸入·加工·사용·調理 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陳列하지 못한다.

第6條 (基準·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化學的 合成品등의 販賣등 禁止)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化學的 合成品인 添加物과 이를 含有한 物質을 添加物로 사용하거나 이를 含有한 食品을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輸入·加工·사용·調理·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陳列하지 못한다. 다만, 保健社會部長官이 食品衛生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條 (基準과 規格) ①保健社會部長官은 國民保健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의 製造·加工·사용·調理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基準과 그 食品 또는 添加物의 成分에 관한 規格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과 規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化學的 合成品인 添加物을 제외한다)로서 國民保健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製造·加工業者로 하여금 製造·加工·사용·調理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自家基準과 그 成分에 관한 自家規格을 제출하게 하여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食品衛生檢査機關의 檢査를 거쳐 이를 당해 食品 또는 添加物의 基準과 規格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의 基準과 規格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輸入者가 요구하는 基準과 規格에 의할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과 規格이 정하여진 食品 또는 添加物은 그 基準에 의하여 製造·加工·사용·調理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基準과 規格에 맞지 아니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은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加工·사용·調理·貯藏·運搬·보존 또는 陳列하지 못한다.

第3章 器具와 容器·포장

第8條 (有毒器具 등의 販賣·사용금지) 有毒·有害物質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어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器具 및 容器·포장과 食品 또는 添加物에 接觸되어 이에 有害한 영향을 줄으로써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器具 및 容器·포장을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輸入·貯藏·運搬 또는 陳列하거나 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

第9條 (基準과 規格) ①保健社會部長官은 國民保健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上 사용하는 器具 및 容器·포장의 製造方法에 관한 基準과 器具, 容器·포장 및 그 原材料에 관한 規格을 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과 規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國民保健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製造·加工業者로 하여금 그 器具·容器·포장의 製造方法에 관한 自家基準과 器具·容器·포장 및 그 原材料에 관한 自家規格을 제출하게 하여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食品衛生檢査機關의 檢査를 거쳐 이를 당해 器具·容器·포장 및 그 原材料의 基準과 規格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器具·容器·포장 및 그 原材料의 基準과 規格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輸入者가 요구하는 基準과 規格에 의할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과 規格이 정하여진 器具 및 容器·포장은 그 基準에

의하여 製造하여야 하며, 그 基準과 規格에 맞지 아니하는 器具 및 容器·포장은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貯藏·運搬·陳列하거나 기타 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

第4章 표 시

第10條 (表示基準) ①保健社會部長官은 國民保健上 特別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과 第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 또는 規格이 정하여진 器具와 容器·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基準을 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基準이 정하여진 食品, 添加物, 器具 및 容器·포장은 그 基準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陳列 또는 運搬하거나 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

第11條 (허위표시등의 금지) ①食品, 添加物, 器具 및 容器·포장의 名稱·製造方法 및 品質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誇大廣告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誇大包裝을 하지 못하며, 食品·添加物의 표시에 있어서는 醫藥品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食品·添加物의 營養價 및 成分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위표시·誇大廣告·誇大包裝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5章 食品·添加物등의 公典

第12條 (食品·添加物등의 公典) 保健社會部長官은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食品·添加物의 基準·規格, 第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器具 및 容器·포장의 基準·規格과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食品·添加物·器具 및 容器·포장의 表示基準을 收錄한 食品·添加物등의 公典을 作成, 普及하여야 한다.

第6章 檢 査

第13條 (製品檢査) ①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

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は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의 製品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品檢査의 방법·節次·手數料·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14條 (製品檢査의 표시) 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は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品檢査에 合格한 食品 및 添加物에 대하여는 그 容器·포장에, 器具 또는 容器·포장에 대하여는 그 자체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第15條 (不合格品등의 販賣등 禁止) 第1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品檢査를 받아야 할 食品, 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은 그 製品檢査에 合格되지 아니하거나 製品檢査에 合格한 뜻의 표시가 없으면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運搬 또는 陳列하거나 기타 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

第16條 (輸入食品등의 申告) ①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上 사용하는 食品, 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食品, 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에 대하여 通關節次完了전에 關係公務員 또는 關係檢査機關으로 하여금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第17條 (臨檢·收去등) ①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は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營業을 하는 者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營業場所·事務所·倉庫·製造所貯藏所·販賣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場所에 臨檢하여 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上 사용하는 食品, 添加物, 器具, 容器·포장 또는 營業施設 등을 檢査하게 하거나 檢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食品, 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營業關係의 帳簿나 書類를 閱覽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臨檢·檢査·收去 또는 閱覽을 하고자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

票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第18條 (食品衛生檢查機關의 지정) ①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は 第1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品檢查와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한 食品, 添加物·器具 또는 容器·포장의 檢查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施設을 갖춘 機關을 食品衛生檢查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衛生檢查機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19條 (自家品質檢查의 義務) ①食品, 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을 製造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製造하는 食品, 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이 第7條 第1項 및 第2項 또는 第9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規格에 적합하지 여부를 檢查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場·直轄市長 또는 道知事は 營業을 하는 者가 직접 檢查하기 부적합한 때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食品衛生檢查機關에 委託하여 檢查하게 할 수 있다.

第20條 (食品衛生監視員) ①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職務 기타 食品衛生에 관한 指導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서울特別市·直轄市·道 또는 市·郡·區에 食品衛生監視員을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衛生監視員의 資格·任命·職務範圍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章 營 業

第21條 (施設基準) ①다음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施設基準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1. 食品 또는 添加物の 製造業·加工業·運搬業·販賣業 및 保存業
2. 器具 또는 容器·포장의 製造業
3. 食品接客業 및 調理販賣業

②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營業의 許可등) ①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의 종류별·營業所別로 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の 許可를 받아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第1項의 경우에 食品 또는 添加物을 製造하는 營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에 있어서의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品目에 대하여는 그 品目마다 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の 品目製造許可를 받아야 한다. 그 品目を 變更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營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廢業하거나 許可받은 사항 중 同項後段의 重要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食品販賣業, 器具 또는 容器·포장의 製造業 또는 食品接客業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變更하거나 休業·再開業 또는 廢業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第23條 (條件附 營業許可) ①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에 대하여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춘 것을 조건으로 이를 許可할 수 있다.

②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期間내에 施設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第24條 (營業許可등의 제한)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2條 第1項·第3項 및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 또는 品目製品의 許可를 할 수 없다.

1. 당해 營業의 施設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施

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다만,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條件附 營業許可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第58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營業場所에서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3. 第58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取消된 營業과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4. 公益上 그 許可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保健社會部長官이 지정하는 營業 또는 品目에 해당될 때

5. 營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禁治產者이거나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인 때

6. 營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인 때

7. 第5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目製造의 許可가 取消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品目の 製造를 하고자 하는 때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2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申告를 할 수 없다.

1. 第58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의 閉鎖命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營業場所에서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2. 第58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의 閉鎖命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閉鎖命을 받은 營業과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第25條 (營業의 承繼) ①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同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營業者”라 한다)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併이 있는 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民事訴訟法에 의한 強制競賣, 競賣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營業施設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이 경우 종전의 營業者에 대한 營業許可 또는 그가 한 申告는 그 效力을 잃는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1월이내에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第24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에 이를 準用한다.

第26條 (健康診斷) ①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 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健康診斷을 받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健康診斷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받은 결과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인정된 者는 그 營業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營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나 第2項의 健康診斷結果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인정된 者를 그 營業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의 실시방법 등과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疾病의 종류는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27條 (衛生教育) ①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 衛生에 관한 教育을 받아야 한다.

②第21條 第1項 第3號의 食品接客業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衛生管理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미리 衛生에 관한 教育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教育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營業開始 후 또는 食品衛生管理人이 된 후 保健社會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教育을 받을 수 있다.

③營業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衛生에 관한 教育을 받지 아니한 者를 그 營業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衛生에 관한

교육의 實施機關 및 내용등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28條 (食品衛生管理人) ①營業者(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에 한한다)중 乳製品, 化學的 合成品인 添加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食品 및 添加物을 製造 또는 加工하는 者는 그 製造 또는 加工을 衛生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食品衛生管理人을 두어야 한다.

②食品衛生管理人은 그 食品 또는 添加物의 製造·加工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製品 및 施設의 衛生管理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衛生管理人을 登者는 第2項의 食品衛生管理人의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上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衛生管理人을 選任한 때 또는 食品衛生管理人을 解任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⑤ 食品衛生管理人의 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9條 (品質管理 및 보고) ①營業者중 食品 및 添加物을 製造 또는 加工하는 者는 原料管理, 製造工程, 기타 品質管理등에 있어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第1項의 營業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食品 및 添加物의 生産實績등을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30條 (營業의 제한) 保健社會部長官은 公益上 또는 선량한 風俗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營業者중 食品接客業을 하는 者(이하 “食品接客營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營業時間 및 營業行爲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第31條 (營業者의 준수사항) 食品接客營業者는 營業의 衛生的 管理 및 秩序維持와 國民保健衛生의 增進을 위하여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第32條 (衛生等級) ①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食品接客營業所의 衛生管理狀態(衛生施設을 포함한다) 등을 查察하여 衛生等級을 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衛生等級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33條 (施設利用의 거부금지) 食品接客營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하고는 營業施設의 이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1. 傳染性疾病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者
2. 賭博 또는 風紀를 문란하게 하는 行위를 하거나 기타 犯法行爲를 하는 者

第8章 調理士 및 營養士

第34條 (調理士) 大統領令이 정하는 食品接客營業者와 集團給食所의 運營者는 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食品接客營業者 또는 集團給食所의 運營者 자신이 調理士가 되어 직접 飲食物을 調理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5條 (營養士) 大統領令이 정하는 集團給食所의 運營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集團給食所의 運營者 자신이 營養士가 되어 직접 營養의 指導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6條 (調理士의 免許) 調理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해당 技術分野의 資格을 얻은 후 市·道知事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第37條 (營養士의 免許) 營養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營養士資格試驗에 合格한 후 保健社會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教育法에 의한 大學 또는 專門大學에서 食品學 또는 營養學을 전공한 자
2. 外國에서 營養士免許를 받은 者
3. 外國의 營養士養成學校중 保健社會部長官이 인정하는 學校를 卒業한 者

第38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調理士 또는 營養士가 될 수 없다.

1. 精神疾患者 또는 心神薄弱者
2. 傳染病患者
3. 麻藥 기타 藥物中毒者

第39條 (名稱使用의 금지) 調理士 또는 營養士가 아니면 調理士 또는 營養士라는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40條 (補修教育) ①保健社會部長官은 調理士 및 營養士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補

修教育을 받을 것을 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補修教育의 教育對象者·教育方法·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41條 (委任) 調理士 및 營養士의 免許와 營養士의 資格試驗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9章 食品衛生審議委員會

第42條 (食品衛生審議委員會) 保健社會部長官의 諮問에 應하여 다음 사항을 調査·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에 食品衛生審議委員會를 둔다.

1. 食中毒防止에 關한 사항
2. 食品·添加物등의 公典作成에 關한 사항
3. 食品, 添加物, 器具 및 容器·포장의 基準과 規格에 關한 사항
4. 國民營養의 調査·指導 및 教育에 關한 사항
5. 기타 食品衛生에 關한 重要사항

第43條 (委任) 食品衛生審議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章 食品衛生團體

第1節 同業者組合

第44條 (設立) ①營業者는 당해 營業의 進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國民保健向上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營業의 종류별로 同業者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②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③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區를 정하여 그 地區안의 組合員의 資格이 있는 者 20人이상의 發起人이 定款을 작성하여 당해 組合의 組合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 3分の2이상이 出席한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쳐 市·道知事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地區가 2이상의 서울特別市·直轄市 또는 道の 管轄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④組合은 第3項의 設立認可가 있는 날에 成立한다.

第45條 (組合의 事業) 組合은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

1. 營業의 進전한 발전과 組合員 共同의 이익을 도모하는 事業

2. 組合員의 營業施設의 개선에 關한 指導

3. 組合員의 經營指導

4. 組合員 및 그 從業員의 教育訓練

5. 組合員 및 그 從業員의 福祉增進을 위한 事業

6. 保健社會部長官이 委託하는 調査·研究事業

7. 第1號 내지 第5號의 事業의 附帶事業

第46條 (定款) 組合의 定款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定款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의 所在地

4. 組合員 및 總會에 關한 사항

5. 任員에 關한 사항

6. 業務에 關한 사항

7. 會計에 關한 사항

8. 解散에 關한 사항

9. 기타 組合의 운영에 關한 重要사항

第47條 (組合任員의 改選命令등)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組合의 決議 또는 任員의 행위가 公益에 반하거나 法令·定款 또는 이 법에 의한 處分에 위반하여 組合員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組合의 事業이나 그 財産의 狀況으로 보아 그 事業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決議를 取消하게 하거나 任員의 解任 또는 改選을 命할 수 있다.

第48條 (代議員會) ①組合員이 500人을 초과하는 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會에 같은할 수 있는 代議員會를 둘 수 있다.

②代議員은 組合員이어야 한다.

第49條 (聯合會) ①組合은 그 共同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聯合體로서 全國을 單位로 하는 同業者組合聯合會(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第44條 第2項·第4項, 第46條 및 第47條의 規定은 聯合會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組合”은 “聯合會”로, “組合員”은 “聯合會의 會員”으로 본다.

第50條 (民法의 準用) 組合 및 聯合會에 關하여는 이 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 중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1條 (自律指導員등) ①組合 및 聯合會는 組合員의 營業施設에 관한 指導·經營指導事業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自律指導員을 둘 수 있다.

②組合 및 聯合會의 管理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節 食品工業協會

第52條 (設立) ①食品工業의 발전과 食品衛生의 향상으로 國民保健의 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韓國食品工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營業者중 食品 또는 添加物을 製造·加工하는 者로 하되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營業者는 當然히 그 會員이 된다.

④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3條 (事業) 協會는 다음 事業을 행한다.

1. 食品工業에 관한 調査·研究
2. 食品·添加物 및 그 原材料의 試驗·檢査業務
3. 食品衛生管理人員의 教育
4. 營業者중 食品 또는 添加物을 製造·加工하는 者의 營業施設의 개선에 관한 指導
5. 第1號 내지 第4號의 事業의 附帶事業

第54條 (準用) 第46條·第47條 및 第51條 第1項의 規定은 協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組合”은 “協會”로, “組合員”은 “協會의 會員”으로 본다.

第11章 是正命令·許可取消등 行政制裁

第55條 (是正命令) ①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등의 衛生的 취급에 관한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營業을 하는 者와 기타 이 法을 지키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②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是正命令을 한 경우에는 그 營業을 管轄하는 官署의 長에게 그 내용을 通報하여 그 是正命令이 이행되도록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第56條 (廢棄處分등) ①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

道知事は 營業을 하는 者가 第4條 내지 第6條, 第7條 第4項, 第8條, 第9條 第4項, 第10條 第2項, 第11條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食品, 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을 押留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營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 食品衛生上의 危害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22條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이를 받지 아니하고 製造·加工·調理한 食品 또는 添加物이나 이에 사용한 器具 또는 容器·포장등을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押留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食品衛生上의 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營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그 食品, 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의 原料, 製造方法, 成分 또는 그 配合比率를 變更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押留 또는 폐기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며, 이 경우에 關係公務員은 押留 또는 폐기할 수 있는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 보여야 한다.

第57條 (施設의 改修命令등) ①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營業者에 대하여 그 營業施設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施設의 改修를 命할 수 있다.

②建築物의 所有者와 營業者등이 다른 경우 建築物의 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다른 施設의 改修에 최대한 協助하여야 한다.

③食品接客營業所에 있어서 建築物의 所有者와 食品接客營業者가 다른 경우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改修를 命하는 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建築物의 所有者에게 衛生施設의 改修를 命할 수 있다.

第58條 (許可의 取消등) ①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許可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하거나, 營業所의 閉鎖

(第22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營業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命할 수 있다.

1. 第4條 내지 第6條, 第7條 第4項, 第8條, 第9條 第4項, 第10條 第2項, 第11條, 第15條, 第19條 第1項, 第22條 第1項 後段·第3項·第4項 및 第5項 後段, 第26條 第3項, 第27條 第3項, 第28條 第1項·第3項 및 第4項, 第29條·第31條 또는 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2. 第2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3. 第24條 第1項 第1號·第5號 또는 第6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제한에 위반한 때

5. 第55條 第1項, 第56條 第1項 및 第3項 또는 第5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營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停止命令에 위반하여 계속 營業行爲를 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營業所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③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營業者가 正當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休業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營業所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第59條 (品目製造許可의 取消등) ①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品目製造許可를 取消하거나 6월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品目の 製造停止를 命할 수 있다.

1. 第7條 第4項, 第9條 第4項, 第10條 第2項, 第11條 第1項, 第15條 또는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2.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22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目製造許可를 받은 者가 正當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당해 品目を 製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品目製造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第60條 (營業許可등의 取消要請) ①保健社會部長官은 畜產物衛生處理法·水産業法 또는 酒稅法에 의하여 許可 또는 免許를 받은 者가 第4條 내지

第6條 또는 第7條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許可 또는 免許를 褫奪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許可 또는 免許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시키거나 기타 衛生上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酒類의 경우에는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이 정한 有害基準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61條 (行政制裁處分效果의 承繼) 營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法人의 合併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營業者에 대하여 第58條 第1項 各號·同條 第2項 또는 第59條 第1項 各號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行政制裁處分의 效果는 그 處分期間이 만료된 날로부터 1年間 讓受人 또는 合併 후 存續하는 法人에 承繼되며, 行政制裁處分의 節次가 進行중인 때에는 讓受人 또는 合併 후 存續하는 法人에 대하여 行政制裁處分의 節次를 續行할 수 있다. 다만, 讓受人 또는 合併 후 存續하는 法人이 讓受 또는 合併時에 그 處分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2條 (閉鎖措置 등) ①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22條 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는 때 또는 第58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되거나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營業을 하는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營業所를 閉鎖하기 위하여 다음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營業所의 看板 기타 營業標識物의 제거 削除

2. 당해 營業所가 適法한 營業所가 아님을 알리는 揭示文등의 附着

3. 당해 營業所의 施設物, 기타 營業에 사용하는 器具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封印

②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封印을 한 후 封印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營業을 하는 者 또는 그 代理人이 당해 營業所를 閉鎖한 것을 約束하거나 기타 正當한 사유를 들어 封印의 解除를 要請하는 때에는 封印을 解除할 수 있다. 第

1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揭示文등의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③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營業을 하는 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 書面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그 營業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第1項의 경우에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關係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第63條(免許取消)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調理士 또는 營養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할 수 있다.

1. 第38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調理士가 그 調理業務에 있어서 食中毒 기타 衛生上 증대한 事故를 발생하게 한 때
3. 免許를 他人에게 貸與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第64條(聽聞)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58條·第59條 또는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處分의 相對方의 住所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와 國民保健衛生上 큰 危害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65條(課徵金 處分) ①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營業者가 第58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1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58條 第1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은 徵收機關이 속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다. 다만, 保健社會部長官이 徵收한 課徵金은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振興基金에 귀속된다.

第12章 補 則

第66條(國庫補助) 保健社會部長官은 豫算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1. 第17條 第1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收去에 소요되는 經費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食品衛生檢查機關에서의 檢查와 實驗에 소요되는 經費
3. 組合·聯合會 및 協會의 教育訓練에 소요되는 經費
4. 第2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衛生監視員의 운영에 소요되는 經費
5. 第45條 第6號 및 第53條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調査·研究事業에 소요되는 經費
6. 第51條 第1項(第5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組合·聯合會 및 協會의 自律指導員의 運營에 소요되는 經費
7. 第56條(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폐기에 소요되는 經費
8.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死體의 解剖에 소요되는 經費

第67條(食中毒에 관한 調査報告) ①食品, 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으로 인하여 中毒을 일으킨 患者 또는 그 疑心이 있는 者를 診斷하였거나 그 死體를 檢索한 醫師 또는 韓醫師는 지체없이 管轄保健所長 또는 保健支所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保健所長 또는 保健支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調査하고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保健支所長은 保健所長을, 保健所長은 市長·郡守를 거쳐야 한다.

③市·道知事は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하였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保健社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68條 (死體解剖) ①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食品, 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으로 인한 疾病 또는 그에 기인하였다고 疑心되는 疾病으로 死亡한 者의 死體를 그 遺族의 同意를 얻어 解剖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死體를 解剖하지 아니하고는 그 원인을 判明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國民保健에 重大한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遺族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여도 그 遺族에게 통지를 한 후에 死體를 解剖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刑事訴訟法의 規定에 의한 强制處分을 排除하지 아니한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死體를 解剖하는 때에는 특히 禮儀를 지켜야 한다.

第69條 (集團給食所) ①集團給食所를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3條 내지 第6條, 第7條 第4項, 第8條, 第9條 第4項, 第10條 第2項, 第15條, 第17條, 第21條, 第26條, 第27條, 第55條 내지 第57條의 規定은 集團給食所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70條 (國民營養調查 및 指導) ①保健社會部長官은 國民營養을 개선하기 위하여 國民營養調查를 실시한다.

②國民營養調查業務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特別市·直轄市 및 道에 國民營養調查員을 둔다.

③서울特別市·直轄市 및 道에는 營養指導員을 두어 給食·營養에 관한 知識의 향상 및 食品의 調理方法·개선등에 필요한 支援 및 指導業務를 행하게 한다.

④國民營養調查의 內容 및 방법, 國民營養調查員 및 營養指導員의 資格·任命節次·기타 國民營養調查實施와 營養指導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1條 (食品振興基金) ①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事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食品振興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基金은 다음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食品衛生團體의 出捐金
2.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이 徵收한 課徵金

3.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③基金은 다음의 事業에 사용한다.

1. 營業者의 營業施設改善을 위한 融資事業
2. 食品衛生에 관한 教育·弘報事業
3. 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에 관한 調査·研究事業
4. 保健社會部長官이 食品衛生에 관하여 組合·聯合會 및 協會에 委託하는 事業
5. 기타 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에 관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④基金은 保健社會部長官이 管理·運用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2條 (委任) 이 법에 의한 保健社會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市·道知事에게, 市·道知事の 權限은 그 일부를 市長(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제외한다)·郡守·區廳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委任할 수 있다.

第73條 (手數料) 이 법에 의한 許可 또는 免許를 받거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13章 罰 則

第74條 (罰則) 第4條 내지 第6條(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8條(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15條(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併科할 수 있다.

第7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併科할 수 있다.

1. 第7條 第4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9條 第4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16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제한에 위반한 者
3. 第56條 第1項 및 第3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5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營業을 계속한者(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營業의 許可를 받은者에 한한다)
 第76條 (罰則) 第28條 第1項 및 第3項, 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위반한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併科할 수 있다.

第7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0條 第2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11條 第1項·第19條 第1項·第22條 第3項 내지 第5項, 第25條 第3項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한者
2. 第16條 第2項·第17條 第1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56條 第1項 및 第2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檢査·臨檢·收去 또는 押留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者
3. 第21條 (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 또는 第2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營業者
4. 第2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태만히 하여 이 法에 위반하는 食品 또는 添加物을 製造·加工하게 한 食品衛生管理人
5. 第29條 第1項 또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者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者
6. 第5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 계속 營業을 한 자(第22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申告를 한者에 한한다) 또는 同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의 閉鎖命令에 위반한者
7. 第5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停止命令에 위반한者
8. 第62條 第1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附着한 揭示文등을 無斷히 제거 또는 損傷한者

第78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에 대하여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26條 第1項 및 第3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27條 第1項 및 第3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67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者
2. 第28條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者
3. 第29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者

4. 第57條 第1項 또는 第3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者는 그 處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을 받은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79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4條 내지 第77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各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80條 (過怠料에 관한 規定適用의 特例) 第78條의 過怠料에 관한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한 행위에 대하여는 過怠料를 賦課할 수 없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處分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중건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處分·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3條 (同業者組合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營業者를 會員으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은 法 施行후 1年이

내에 第44條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적합하도록 定款을 變更하고 기타 요건을 갖추어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음으로써 이 法에 의한 組合이 될 수 있다.

② 이 法 施行 당시의 同業者組合 및 同業者組合聯合會는 이 法에 의한 組合 및 聯合會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이 法에 맞도록 款定을 變更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第4條 (韓國食品工業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의 社團法人 韓國食品工業協會는 이 法에 의한 協會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이 法에 맞도록 定款을 變更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第5條 (集團給食所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集團給食所를 운영하는 者는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6條 (營業許可制限에 해당하는 營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의 營業者로서 第24條 第1項 第5號 및 第6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후 6月동안은 第58條 第1項 第3號(第24條 第1項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1項 本文중 “食品衛生法 第23條 第1項 및 第3項”을 “食品衛生法 第22條 第1項 및 第3項”으로, “同法 第5條, 第6條 第4項”을 “同法 第6條, 第7條 第4項”으로 한다.

第8條 (課徵金の 귀속에 관한 特例) 第65條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が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은 同條 第4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限까지는 食品振興基金에 귀속된다.

罰則規程對比表

(表 別)

違 反 事 項	改 正	現 行	備 考
○腐敗·變質·未熟·有毒·有害物質 含有等 販賣禁止(改正 第4條)	5年以下の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罰金(第74條)	3年以下の懲役 또는 300萬원以下の罰金(第43條 第1號)	
○病肉等의 販賣等 禁止(改正 第5條)	〃	〃	
○基準·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化學的 合成品等의 販賣等 禁止(集團給食所 準用) (改正 第6條)	〃	〃	
○有毒器具等의 販賣·使用禁止(改正 第8條)	〃	3年以下の懲役 또는 100萬원以下の罰金(第44條 第1號)	
○製品檢査 不合格品等의 販賣等 禁止 (集團給食所 準用) (改正 第15條)	〃	1年以下の懲役 또는 50萬원以下の罰金(第45條 第1號)	
○無許可 營業等(改正 第22條 第1項)	〃	3年以下の懲役 또는 100萬원以下の罰金(第44條 第1號)	
○食品 또는 添加物의 基準과 規格違反 (集團給食所 準用) (改正 第7條 第4項)	3年以下の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の罰金(第75條 第1號)	3年以下の懲役 또는 100萬원以下の罰金(第44條 第1號)	
○器具 및 容器·包裝의 基準과 規格違反(集團給食所 準用) (改正 第9條 第4項)	〃	1年以下の懲役 또는 50萬원以下の罰金(第45條 第1號)	
○輸入食品等의 申告違反(改正 第16條 第1項)	〃	3年以下の懲役 또는 100萬원以下の罰金(第44條 第1號)	
○營業時間 및 營業行爲等 制限에 違反 (改正 第30條)	〃 (第75條 第2號)	(新 設)	
○廢棄處分等 措置에 대한 命令違反(集團給食所 準用) (第56條 第1項 및 第3項)	3年以下の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の罰金(第75條 第3號)	1年以下の懲役 또는 50萬원 以下の罰金(第45條 第3號)	

違 反 事 項	改 正	現 行	備 考
○營業停止命令에 違反하여 營業을 繼續한 者. 다만,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에 限함. (改正 第58條 第1項)	" (第75條 第4號)	" (第45條 第3項)	
○食品衛生管理人 雇傭違反(改正 第28條 第1項)	2年以下 懲役 또는 500萬 원以下の 罰金(第76條)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 원以下の 罰金(第45條 第1項)	
○營業主의 食品衛生管理人에 대한 業務 妨害禁止등 違反(改正 第28條 第3項)	"	(新 設)	
○調理士 雇傭違反(改正 第34條)	"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 원以下の 罰金(第45條 第4號)	
○營養士 雇傭違反(改正 第35條)	"	"	
○表示基準 違反(集團給食所 準用) (改正 第10條 第2項)	1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 萬원以下の 罰金(第77條 第1號)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 원以下の 罰金(第45條 第1號)	
○虛偽表示등의 禁止(改正 第11條 第1 項)	"	"	
○自家品質檢査의 義務違反 (改正 第19條 第1項)	"	(新 設)	
○無許可品目製造(改正 第22條 第3項)	"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 원以下の 罰金(第45條 第1號)	
○營業許可 받은 者의 休業, 再開業等 申告違反(改正 第22條 第4項)	"		
○營業申告 받은 者의 休業, 再開業等 申告 違反(改正 第22條 第5項)	"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 원以下の 罰金(第45條 第1號)	
○營業의 承繼申告 違反(改正 第25條 第 3項)	"	(新 設)	
○調理士 또는 營養士의 名稱使用禁止 (改正 第39條)	"	30萬원 以下の 罰金 또는 拘 留(第46條 第3號)	
○檢査·臨檢·收去 또는 押留를 拒否 하거나 妨害 또는 忌避한 者 [改正 第16條 第2項, 第17條 第1項 (第69條 準用) 또는 第56條 第1項 및 第2項(第69條 準用)]	" (第77條 第2號)	30萬원 以下の 罰金 또는 拘 留(第46條 第1號)	
○施設基準(集團給食所 準用) 違反 (改正 第21條)	" (第77條 第3號)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 원以下の 罰金(第45條 第2號)	
○條件에 違反한 者(改正 第22條 第2 項)	"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 원以下の 罰金(第45條 第2號)	
○義務 및 怠慢등을 違反하는 食品衛生 管理人(改正 第28條 第2項)	1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 萬원 以下の 罰金(第77條 第4號)	30萬원 以下の 罰金 또는 拘留 (第46條 第2號)	
○品質管理 報告 및 營業者가 지켜야 할 事項 違反(改正 第29條 第1項 및 第31條)	" (第77條 第5號)	30萬원 以下 罰金 또는 拘留 (第46條 第4號)	
○營業停止命令에 違反하여 繼續 營業 한 者. 다만, 營業의 申告를 한 者 (改正 第58條 第1項)	" (第77條 第6號)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 원 以下 罰金(第45條 第3項)	
○營業停止 命令에 違反하여 營業所의	"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 원	

違 反 事 項	改 正	現 行	備 考
閉鎖 命令에 違反(改正 第58條第2項)		以下 罰金(第45條 第3項)	
○品目製造停止 命令違反 (改正 第59條 第1項)	1年以下の 懲役 또는 300萬원以下の 罰金(第77條 第7號)	(新 設)	
○關係公務員이 附着한 揭示物等 斷無 除去 또는 損傷한 者 (改正 第62條 第1項 第2號)	“ (第77號第8條)	(新 設)	
○施設의 改修命令違反 (改正 第57條 第1項)	100萬원以下の 過怠料 (第78條 第4號)	1年以下 懲役 또는 50萬원 以下 罰金(第45條 第3號)	
○食中毒 報告違反(改正 第67條)	100萬원 以下の 過怠料 (第78條 第1號)	30萬원 以下 罰金 또는 拘留 (第46條 第3號)	

〈51面에서 계속〉

맞는 고급의 팜유를 대량 생산,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제 식용유 시장에서 팜유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팜유는 여러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 제1의 콩기를 생산 수출국인 미국에서도 팜유의 사용량이 늘고 있다.

PORLA는 말레이시아산 팜유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PORLA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확한 기준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등급 체계를 확립하는 등 고급의 팜유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이다.

(4) 영양적 가치

일상 균형식 중에서 팜유는 건강에 이로운 에너지원이다. 팜유는 50%의 포화지방산과 50%의 불포화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불포화지방산 중 8~12%가 리놀레인산이다. (리놀레인산은 음식물로 섭취하지 않으면 결핍 증상을 나타내는 필수지방산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팜유는 포화지방산 섭취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중성지방이다.

최근들어 지나친 동물유 섭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용유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마아가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팜유는 특히 가치

를 지니고 있다. 말레이시아산 팜유가 50%의 불포화지방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포화지방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팜유는 콜레스테롤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성지방이라 할 수 있다.

(5) 팜유의 우위성과 다용도성

팜유의 가장 큰 잠재적 기능성은 그 다용도성이라 할 수 있다. 팜유는 식용과 공업용으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팜유는 정제 과정을 거쳐 혼합된 자연적인 밝은 색 제품이 될 수 있으며 품질이 우수하여 마아가린, 쇼트닝 과자를 만드는 데 쓰인다. 팜유는 잘 산화되지 않고 산소 중합체 형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넣고 튀기는데 주로 사용되며 올레인은 거품을 만들지 않는 성질이 있으므로 식용유로 많이 쓰인다. 또한 농축우유의 버터 지방, 아이스크림의 지방성분, 코코아 버터 대체물로 많이 쓰인다. 공업용으로는 비누, 화장품, 윤활유, 유연제 제조 등을 들 수 있다.

PORLA(말레이시아 팜유 연구소)는 팜유의 최종적인 용도를 더욱 다양화하고 현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주도하는 기관이다.